

의안번호	2126546
의 퇴 인	이헌승 의원
회 답 일	2024. 3. 12.
추 계 번호	24F0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PF 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 194.4억원, 2025년 124.2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318.6억원(15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건축주가 신축·취득하는 소형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4년 137억원, 2025년 91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228억원(연평균 114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 단,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 1년간 총 2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기존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 33.2억원, 2025년 33.2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6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단위: 억원)

	2024	2025	누적	연평균
소형주택 신축·취득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33조의2)	-137.0	-91.0	-228.0	-114.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33조의3)	-24.2	-	-24.2	-24.2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으로 취득하는 기존 사업장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57조의3제6항)	-33.2	-33.2	-66.3	-33.2
계	-194.4	-124.2	-318.6	-159.3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건축주가 소형주택 신축·취득 시 원시취득세 25% 감면 - 감면대상: 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② 전용면적 60㎡ 이하 - 감면율: 25% (조례로 최대 25% 추가 감면 가능) - 적용기한: 2025.12.31.	
2	안 제33조의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25% 감면 - 감면대상: ①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② 전용면적 85㎡ 이하 ③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 ④ 적용기한 내 2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 감면율: 25% (조례로 최대 25% 추가 감면 가능) - 적용기한: 2024.12.31.	
3	안 제57조의3제6항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PF정상화집합투자기금의 자금으로 기존 PF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 PF정상화집합투자기금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25.12.31. - 단, PF정상화집합투자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투자한 경우로 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2	안 제33조의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	
3	안 제57조의3제6항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소형주택 수 및 면적) 주택유형별 소형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수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 준공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전체 준공 주택 중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고, 소형주택의 전용면적은 60㎡로 동일하다고 가정
 - (소형주택 수 증감률) 신축 소형주택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 준공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별 소형주택 준공 추정치의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소형주택 건축가격) 소형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별 건축자금으로 가정하며, 건축자금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2023 건물신축단가표」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며,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 및 면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연도별·면적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60㎡와 85㎡ 두 종류일 것으로 가정
 - (임대아파트 비중) 향후 임대로 활용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2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자가/임차/무상) 중 ‘임차’가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건축가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주택별 건축자금으로 가정하며, 건축자금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2023 건물신축단가표」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은 해당 펀드의 총 투자기간인 4년 동안 연간 균등 투자한다고 가정
 - － 한국자산관리공사 확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 출자하여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5개사가 참여하며 총 규모는 1.1조원, 투자기간은 4년('24~'27년)으로 설정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 비중) 향후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 중 PF사업장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목적 투자 최소 비중인 60%로 가정¹⁾
 -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주목적은 부지 매입비용, 인허가 비용(취등록세 포함)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
- 개정안은 2024년 상반기 중 통과되어 하반기(7월)부터 시행된다고 가정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2024년 하반기 6개월, 2025년 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
 - 다만, 개정안 부칙에 따라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2024~2025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2024년 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
 - －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1) 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자료, “캠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23.5.4.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추계방법

-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신축 소형주택 물량 및 과세표준을 전망하여 세수효과 추계
 - (신축 소형주택 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의 연도별·지역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준공 실적을 바탕으로 소형주택 비중 및 주택 준공 실적의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전망
 - 전체 준공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은 연도별·지역별로 다르며, 2023년 전국 기준 소형주택 비중은 37.6% 수준

[표 2] 규모별 주택 준공 실적: 2021~2023년

(단위: 호, %)

	2021년			2022년			2023년		
	60㎡ 이하(A)	60㎡ 초과(B)	소형주택 비중 ¹⁾	60㎡ 이하(A)	60㎡ 초과(B)	소형주택 비중 ¹⁾	60㎡ 이하(A)	60㎡ 초과(B)	소형주택 비중 ¹⁾
전국	196,611	234,783	45.6	160,031	253,767	38.7	118,822	197,593	37.6
서울	48,412	23,017	67.8	36,626	19,603	65.1	21,431	5,846	78.6
부산	11,445	18,536	38.2	9,240	18,118	33.8	3,064	7,668	28.6
대구	9,667	6,738	58.9	4,021	17,067	19.1	2,856	14,491	16.5
인천	12,301	13,593	47.5	11,294	28,193	28.6	13,182	17,134	43.5
광주	2,689	6,116	30.5	1,335	11,118	10.7	1,027	2,321	30.7
대전	2,113	5,999	26.0	3,946	7,787	33.6	882	2,995	22.7
울산	1,220	1,621	42.9	1,667	3,094	35.0	1,424	6,289	18.5
세종	3,370	5,760	36.9	1,815	2,479	42.3	743	537	58.0
경기	68,716	81,181	45.8	53,335	79,865	40.0	45,697	73,887	38.2
강원	5,829	12,604	31.6	2,033	7,573	21.2	3,937	6,634	37.2
충북	4,476	9,410	32.2	4,340	6,648	39.5	6,560	6,645	49.7
충남	5,228	9,441	35.6	13,824	17,047	44.8	6,957	17,770	28.1
전북	4,248	5,402	44.0	7,137	5,738	55.4	2,229	6,650	25.1
전남	7,371	9,976	42.5	3,221	12,869	20.0	2,966	9,220	24.3
경북	2,768	12,197	18.5	3,399	5,262	39.2	1,805	8,990	16.7
경남	6,349	9,801	39.3	2,355	7,806	23.2	3,167	6,841	31.6
제주	409	3,391	10.8	443	3,500	11.2	895	3,675	19.6

주: 1) 전체 준공 실적 대비 60㎡ 이하 소형주택 준공 실적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유형별 주택 전체 준공 실적을 바탕으로 연도별·지역별 소형주택 비중을 반영하여 유형별 주택의 소형주택 물량을 추정하고,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증감률 산출

[표 3] 유형별 소형주택 추정: 2021~2023년

(단위: 동, 호, %)

		2021년	2022년	2023년	'21~'23년 연평균 증감률
다가구주택	전체	5,911	5,444	3,225	-
	소형주택	2,694	2,105	1,211	-33.0
공동주택	전체	54,495	47,622	32,313	-
	소형주택	24,836	18,417	12,134	-30.1
도시형생활주택	전체	37,845	34,227	14,870	-
	소형주택	17,248	13,237	5,584	-43.1

주: 1) 연도별·지역별 전체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을 반영하여 추정

2)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동'이 단위이고,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호'가 단위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의 단위가 '동'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내용을 반영하여 1개 동별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가 11호일 것으로 가정하여 '호' 단위의 소형주택 수 추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함

[표 4] 유형별 소형주택 수 전망: 2024~2025년

		2024년	2025년
다가구주택 ¹⁾	동 단위(A)	812	544
	호 단위(B=A×11)	8,932	5,984
공동주택		8,481	5,928
도시형생활주택		3,177	1,808

주: 1)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일 것으로 가정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여 1개 동별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 수가 11호일 것으로 가정하여 호 단위의 다가구 주택 수 추정

- (과세표준) 소형주택 면적(60㎡)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2023 건물신축단가표」의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주택별 평균 과세표준 및 전체 과세표준 전망

- 다만, 건물표준단가는 용도 및 구조, 급수에 따라 다르므로 용도별·구조별·급수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평균하여 적용

[표 5]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 2023.1 기준

(단위: 원)

용도		구조	급수 ¹⁾	면적(㎡)당 표준단가
다가구		조적조(연와) 슬래브위	2급	1,751,000
		아스팔트성글	3급	1,441,000
		평균		1,596,000
공동주택	연립주택	조적조(시멘트벽돌)	3급	1,383,000
		슬래브지붕	4급	1,271,000
		조적조(연와) 슬래브위	1급	1,465,000
		오지기와잇기	2급	1,347,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급	1,758,000
			3급	1,567,000
			4급	1,375,000
	다세대주택	조적조(시멘트벽돌)	2급	1,484,000
		슬래브위 아스팔트성글	3급	1,151,000
		철근콘크리트조	2급	1,605,000
		슬래브위 아스팔트성글	3급	1,395,000
	평균			1,436,455
	도시형 생활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급
3급				1,944,000
4급				1,752,000
평균			1,931,667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3 건물신축단가표」, 2023.11.

[표 6] 과세표준 추정: 2024~2025년

	용도별 면적당 표준단가(원) (A)	주택별 과세표준(만원) (B=A×60㎡)	소형주택 수 전망(호)		전체 과세표준(억원)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다가구주택	1,596,000	9,576	8,932	5,984	8,553	5,730
공동주택	1,436,455	8,619	8,481	5,928	7,310	5,109
도시형 생활주택	1,931,667	11,590	3,177	1,808	3,682	2,095

-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추정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원시취득세율(2.8%) 및 감면율(25%)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2024년 137억원, 2025년 91억원으로 추정

[표 7]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2024~2025년

	과세표준(억원) (A)		취득세액(억원) (B=A×2.8%)		감면액(억원) (C=B×25%)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다가구주택	8,553	5,730	239	160	60	40
공동주택	7,310	5,109	205	143	51	36
도시형 생활주택	3,682	2,095	103	59	26	15
계	19,545	12,934	547	362	137	91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 및 과세표준을 전망하여 세수효과 추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아파트 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의 연도별·면적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실적을 바탕으로 「주거실태조사」상 2022년 기준 지방 평균 임차 비중을 반영하여 전망

[표 8] 지역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¹⁾ 실적: 2021~2023년

(단위: 호)

	2021년		2022년		2023년	
	60㎡ 이하	60~85㎡	60㎡ 이하	60~85㎡	60㎡ 이하	60~85㎡
전국	2,736	4,451	3,123	4,060	4,139	5,955
서울	50	2	257	83	403	55
부산	484	216	668	236	640	223
대구	2	113	7	263	7	907
인천	151	—	90	253	254	343
광주	11	16	—	—	87	38
대전	311	—	357	—	395	41
울산	80	90	44	90	40	143
경기	200	149	301	201	517	408
세종	—	—	—	—	27	28
강원	342	279	285	299	265	244
충북	—	138	—	38	26	35
충남	353	613	166	388	430	406
전북	80	22	84	1	123	27
전남	365	58	591	347	531	658
경북	102	1,086	92	787	90	707
경남	147	1,009	130	547	232	865
제주	58	660	51	527	72	827

주: 1)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를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표 9] 면적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 전망: 2024년

(단위: 호, %)

	60㎡ 이하			60~85㎡		
	2023년	'21~'23년 연평균 증감률	2024년	2023년	'21~'23년 연평균 증감률	2024년
미분양 아파트 수 ¹⁾	2,965	(12.7)	3,341	5,149	(9.4)	5,634

주: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를 의미

-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은 2024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망치를 바탕으로 「주거실태조사」상 2022년 기준 지방 평균 임차가구 비중을 반영하여 전망

[표 10] 면적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 전망: 2024년

(단위: 호, %)

	임차가구 비중 ¹⁾	60㎡ 이하		60~85㎡	
		전체	임대 물량	전체	임대 물량
미분양 아파트 수 ²⁾	33.4	3,341	1,117	5,634	1,883

주: 1) 「주거실태조사」상 2022년 기준 지방 평균 전체 가구 중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를 의미

- (과세표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면적(60㎡/85㎡)을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원이 제출한 「2023 건물신축단가표」의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주택별 평균 과세표준 및 전체 과세표준 전망
 - 다만, 건물표준단가는 용도 및 구조, 급수에 따라 다르므로 용도별·구조별·급수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평균하여 적용

[표 11]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 2023.1 기준

(단위: 원)

용도	구조	급수 ¹⁾	면적(㎡)당 표준단가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6~15층)	2급	1,666,000
		3급	1,560,000
		4급	1,303,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6~29층)	2급	1,690,000
		3급	1,577,000
		4급	1,357,000
	평균		1,525,500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3 건물신축단가표」, 2023.11.

[표 12] 과세표준 추정: 2024년

	주택 면적(㎡)	용도별 면적당 표준단가(원) (A)	주택별 과세표준(만원) (B=A×60㎡)	임대아파트 수 전망(호)	전체 과세표준(억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60	1,525,500	9,153	1,117	1,022
	85	1,525,500	12,967	1,883	2,442

-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추정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원시취득세율(2.8%) 및 감면율(25%)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2024년 24억원으로 추정

[표 13]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2024년

	주택 면적(㎡)	과세표준(억원) (A)	취득세액(억원) (B=A×2.8%)	감면액(억원) (C=B×2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60	1,022	29	7
	85	2,442	68	17
계		3,464	97	24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부동산 취득 투자 자금 규모를 추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은 해당 펀드의 총 투자기간인 4년('24~'27년) 동안 연간 균등 투자하며, 개정안의 적용기한(~'25.12.31.)까지 총 자금 1조 1,050억원 중 50%인 5,525억원을 2년간 투자한다고 가정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는 위탁운용사(이지스, 신한, 캡스톤, 코람코, KB 등 5개사)가 운용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 운용사에 1,000억씩(전체 펀드규모 중 50%) 투자²⁾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 중 최소 60%는 주목적인 부동산 취득에 투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에 따라 5,525억원 중 60%인 3,315억원을 PF 기존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고 가정
- 2년간('25.12.31) 부동산 취득 금액인 3,315억원을 바탕으로 연간 취득세율(4%) 및 감면율(50%)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표 14]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2024~2025년

(단위: 억원)

	2024년	2025년
연간 펀드투자금액(A)	2,763	2,763
부동산 취득금액(B=A×60%)	1,658	1,658
취득세액(C=B×4%)	66	66
감면액(D=C×50%)	33	33

(2) 추계결과

□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PF 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부

2) 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자료, “캠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23.5.4.

동산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 194.4억원, 2025년 124.2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318.6억원(15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건축주가 신축·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4년 137억원, 2025년 91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228억원(연평균 114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단,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 1년간 총 2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기존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 33.2억원, 2025년 33.2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6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단위: 억원)

	2024	2025	누적	연평균
소형주택 신축·취득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33조의2)	-137.0	-91.0	-228.0	-114.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33조의3)	-24.2	-	-24.2	-24.2
PF정상화집합투자기구 자금으로 취득하는 기존 사업장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57조의3제6항)	-33.2	-33.2	-66.3	-33.2
계	-194.4	-124.2	-318.6	-159.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